

★ ◎

감사 방침 제44호

문서번호	행정감사부-1057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6.04.22
공개여부	비공개(6)
일상감사	대상아님

부 원	행정감사부장	감사실장	감사	
송호윤	김주민	김광석	04/22 김현식	
협 조	파트장	이창배	기술감사부장	백경희

감사자문단(풀) 구성 및 운영계획

서울특별시 SH공사
(행정감사부)

감사자문단(풀) 구성 및 운영계획

자체감사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예방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역량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감사자문단 인력 풀(Pool)을 구성.운영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○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

-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·보건·환경·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.

○ 「일상감사 내실화 계획 후속조치」(감사방침 제298호, 2014.10.31.)

-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자문단을 운영

○ 「감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」(감사방침 제363호, 2014.12.16.)

- 세부 구성.운영 방안 등

II 감사자문단(풀) 구성·운영

○ 방 향

- 위 2014년도 방침들을 토대로 하되, 공사 업무영역의 다양화(공공디벨로퍼, 도시재생 등) 등 여건변화로 감사자문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문분야를 세분화하고 자문인력도 대폭 증원
- 자문단 개인별로는 회의 참석기회가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위촉행위는 생략, 자문인력 풀(Pool)을 구성해 두고, 사안별로 당해 풀 중 해당분야의 적합인사에게 자문

○ 구 성

- 자문분야
 - 감사일반 :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감사 분야, 주제, 감사내용 및 결과 등
 - 행정분야 : 법률.노무.세무.회계.감정평가
 - 기술분야 : 건축.토목.조경.기계.전기
- 인 원 : 사내 각 부서, 서울시 감사부서, 관계직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0명 내외로 구성
- 활동기간 : 별도의 위촉절차 및 임기 없이 금회 자문단 풀 구성 후 위원별 자문결과 활용도와 자문분야 및 자문인력의 확대.축소가 필요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문인력 정비

○ 운 영

- 자문회의 :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(필요시 사전 서면검토 병행)
 - 서면자문 :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시 전문분야별 서면자문 의뢰
 - 현장자문 : 감사자문단이 공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문
- ※ 개별감사 수행시 기 선정된 인력풀 외 별도의 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선임하여 자문 의뢰

※ 2014년도 감사방침(제363호)과의 비교

구분	2014년 감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	2016년 변경사항
자문 분야	- 감사계획 수립, 집행,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- 감사활동 개선방안 - 감사활동 역량 강화방안	(변동 없음)
자문 방법	- 자문회의 참석(전부 또는 일부) - 서면자문 : 서면자문 의뢰시 - 현장자문 : 현장방문시	(변동 없음)
구성	- 총 18명=분야별(9명 내)+시민(9명 내) · 분야별 1~2명 - 임기 1년(연임 가능) - 시민감사자문단(시민단체) 별도 구성	-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100명 내외로 자문단 풀 구성, 자문수요 발생시 풀 구성원 중 적합인사에게 자문 의뢰 - 임기 없이 필요시 자문인력 정비 또는 추가 - 시민감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필요시 옴부즈만에게 조사 의뢰하되, 자문인력 풀에도 시민단체 인사 추가

III 기타사항

- 자문인사의 자문안건 관련 비밀누설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
 - 자문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
 - 공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회피
 - 자문단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, 이권개입 등 금지

※ 자문 의뢰시 주의사항으로 고지하되 필요시 서약서 징구

- 자문수당 지급
 - 지급대상 : 회의 참석, 서면 의견 진술, 현장 방문시
 - 지급근거 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2항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
 - 지급액 : 공사 “연도별 기술심의 수당지급 기준”에 의함(16년 : 261,000원/인)

붙임 1. 일상감사 내실화 계획 후속조치(감사방침 제298호, 2014.10.31.)
 2. 감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(감사방침 제363호, 2014.12.16.)
 3. 감사자문단 인력풀(안). 끝.